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

## 정비사업전문관리업 (변경)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	접수일		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명 칭				nlo	법인 동록번호	
	대 표 자					년월일	
	주된 사무소 소재지					화번호	
자본금							
기술인력	성 명		생년월일			분C	냐 및 자격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## **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**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.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3.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협약서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합니다) ※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합니다.	등록 수수료 10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※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,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, 이 서류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	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 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(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)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